

신용평가 필수서류 제출방법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서류 준비 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비공개로 준비 바랍니다.
-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4~6월에는 당일 서류접수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요청] 이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12시"까지 필수서류가 누락 없이 모두 제출되고 [접수요청]이 완료된 경우 당일 서류접수 완료가 가능합니다.
 - 일반평가 서비스 : 서류접수완료일 + 5영업일 소요
 - 급행평가 서비스 : 서류접수완료일 + 1영업일 ~ 4영업일 소요
 - 당일급행 서비스 : 서류접수완료일 당일 평가제공
(신청서비스별 적용 가능한 급행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이후 [접수요청]을 완료하여 주시면 담당자 배정되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접수요청] 메뉴 위치 : ① 평가안내 > [필수서류제출현황 (접수요청)] ② 빠른서비스 [필수제출현황 (접수요청)]

필수 제출서류

NO	서류명	제출방법	유의사항
공통필수 : 공공입찰용등급확인서, CLIP평가보고서, 당좌평가, 아파트평가 신청기업은 1번 ~ 5번 "공통필수"서류 준비하여 제출			
1	기업실대표	온라인작성	[필수제출서류 1번 "기업실대표 작성하기" 클릭하여 작성 후 전송] * 갱신업체의 경우, 기존 제출한 실대표를 복사하여 변경 부분 업데이트 * 건설업종의 경우 "업종특화작성항목 > 건설업체 필수작성항목" 작성
2	온라인동의서	본인인증/서류제출	[필수제출서류 2번 클릭하여 본인인증 또는 서류제출 택 1] * 본인인증 :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진행 (별도 서류제출 생략) * 서류제출 : 도장/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업로드 또는 팩스발송
3	사업자등록증	자료전송 (인증서) 바로가기	[필수제출서류 3 ~ 6번 "자료전송(인증서)" 클릭하여 일괄전송 가능]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전송 (갱신의 경우 최근 1년) - 법인 / 개인사업자 : 2020년 ~ 2022년 전송 ★ 개인사업자 2022년 재무제표는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및 전송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재무제표신고서"로 전송됩니다. ("대표자개인 인증서"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서" 로그인시 전송가능) ★ 성실신고 기업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1부 제출 필요! * 부가세자료 전송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 부가세매입매출처 합계표) - 법인사업자 : 2022년 1월 ~ 2023년 03월 (1분기) 전송 - 개인사업자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하반기) 전송
4	표준재무제표		
5	부가세자료		
CLIP필수 : CLIP보고서 신청기업은 "공통필수"서류 외 6번 ~ 9번 서류도 제출, 단 7번 ~ 9번은 건설업종인 경우만 해당 ★ 건설실적보고서를 함께 신청한 경우 7번, 8번은 중복되는 서류로 1부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CLIP필수	납세증명원(국세)	[필수제출서류 3 ~ 6번 "자료전송(인증서)" 클릭하여 일괄전송 가능] ★ 개인사업자는 자료전송 또는 발급 후 스캔하여 파일업로드 가능 ("대표자개인 인증서"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서" 로그인시 전송가능)
7	CLIP필수 (건설업종)	시공능력순위확인원	* 2020년 ~ 2022년 3개년 제출 (갱신의 경우 2022년만 제출) - 전문건설 업체의 경우 "주력분야"로 발급 必 (협회별 서류명 참고)
8		건설공사실적확인원	* 2019년 ~ 2021년 3개년 제출 (갱신의 경우 2021년만 제출) - "총괄표" + "실적내역표(신고서)" 모두 제출 - 전문건설 업체의 경우 "주력분야"로 발급 必 (협회별 서류명 참고)
9		기성실적신고서	* 2022년 기성실적신고서 제출 (2023년 2월 신고) - "총괄표" + "실적내역표(신고서)" 모두 제출

※ 4번 :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

- ✓ 자료전송(인증서) 바로가기 <http://nicetax.nicednb.com> (신청기업 직접전송, 세무대리인 대리전송 모두 가능)
-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1부, 개인사업자 재무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신설업체의 경우 설립일 이후 확정재무제표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신고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외감/상장 등 금융감독원 DART 공시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공시 전인 경우 "감사보고서" 별도 제출)
- ✓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외 공익사업을 포함한 "통합재무제표" 보유여부 확인 후 추가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갱신 최근 1년)으로 자료전송 또는 서류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전송(인증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90일 이내발급분 표준재무제표**"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번 : 부가세자료 제출 유의사항

- ✓ 본/지점별 부가세신고를 각각 진행하시는 경우 사업자번호별로 전송 해주시면 법인번호 기준 합산하여 거래처분석에 반영됩니다.

※ 6번 : 납세증명원(국세)_개인사업자 제출 유의사항

- ✓ 자료전송(인증서)로 전송 가능: "대표자 개인 인증서"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시 전송 가능 (사업자인증서는 전송 불가)
- ✓ 서류제출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납세증명서 다운로드 하여 서류제출 (파일업로드)

※ 7~8번 : 전문건설면허 보유시 시공능력순위확인원, 건설공사실적확인원 제출 유의사항

- ✓ 대한전문건설협회 증명발급 시스템 <https://minwon.kosca.or.kr> > 증명서신청 > 증명발급신청_주력분야

※ 7~9번 : 건설업종 서류 간소화가 적용되는 "공공입찰용등급확인서", "아파트평가", "당좌평가" 신청기업 유의사항

- ✓ 1번 기업실태표 [업종특화 작성항목] 중 "건설업체 필수작성항목"에서 면허 및 시공능력현황, 전문인력, 이월공사내역, 신규계약공사 등을 작성하여 주시면 평가에 반영됩니다. 미작성시 점수반영이 제외될 수 있으며 "건설업체 필수작성항목"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7~8번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번호 : 02-2122-2550 / 02-2122-2308 대표팩스 : 02-2122-2303 / 02-2122-2300

나이스디앤비-제휴 [바로가기](#) (통합신청 / 서류제출 / 결과조회 / 전송)

▣ 자주하는질문

Q. 처음으로 신용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용평가(공공기관입찰용 등급확인서 / CLIP보고서 등)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평가신청
2. 수수료 입금 : 가상계좌 발급
3. 필수서류 제출 : 자료전송, 서류제출(스캔하여 파일업로드, FAX 등) 진행
4. 접수 및 평가진행 : 기업정보입력, 재무분석, 기업평가실 담당 연구원이 내용분석 후 등급산정 및 보고서 작성
5. 평가결과 조회 및 전송 : 홈페이지에서 결과조회 및 출력, 제출처에 전송 가능

Q. 신용평가 등급서(보고서)를 받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 **일반평가 서비스** : 서류접수완료일 + 5영업일 소요
- * **급행평가 서비스** : 서류접수완료일 + 1 ~ 4영업일 소요
- * **당일급행 서비스** : 서류접수완료일 당일 평가제공

오전 "12시"까지 신청, 수수료 입금, 필수서류제출 확인이 완료된 경우 당일접수가 가능하며, 평가성수기에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비스별 적용 가능한 급행서비스 확인 필요)

먼저 제출된 서류부터 순차적으로 확인 후 접수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온라인동의서, 기업실태표, 자료전송(인증서)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신 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실태표에 작성 항목이 너무 많으며, 이 중 회사 내부의 영업상황 등 외부공개가 어려운 자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실태표가 꼭 필요한가요?

온라인 실태표는 신용평가 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평가 담당자가 평가 업무를 시작할 때 처음 보게 되고 기업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실태표입니다. 외부 공개가 어려운 항목 등 모든 항목을 다 채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을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중요 항목은 누락없이 작성해야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작성항목은 기업현황/경영진/매출구성현황/거래처현황/차입금현황/건설실적(건설업증필수) 등입니다.

Q. 신설법인으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평가(현금흐름등급)가 가능한가요?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신용평가를 진행하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신설기업의 경우, 세무당국 등에 신고한 재무자료가 없으므로 비재무적 요소(경영진 전문성, 자본금, 영업계획, 거래처분석 등)에 의존하여 신용평가를 진행하며, 비재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신용도가 우수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 및 협력업체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CLIP보고서의 현금흐름등급은 최소 2개년도 재무제표가 제출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공공평가와 민간평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서류는 한번만 제출해도 되나요?

동시신청으로 진행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동시신청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 확인하여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입금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가상계좌로 입금하신 수수료는 "입금일"로부터, 무통장입금의 경우 "입금확인일"로부터 약 1 ~ 2영업일 내 신청 시 입력한 세금계산서 담당자의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며 국세청 또는 당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 메뉴 "[나의정보 > 세금계산서확인](#)"에서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Q. 자료전송(인증서) 기능을 통해 재무/부가세자료를 전송할 때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자료전송 메뉴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 로그인과 상관 없이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재무제표/부가세 자료 전송이 가능합니다. 신청업체 담당자가 아닌 수임계약이 되어 있는 세무대리인도 당사홈페이지 우측 "편의기능 3번 > 재무자료 전송/제출"을 통해 전송 또는 별도의 URL을 통해 접속하여 평가진행기업의 자료전송이 가능합니다.

<https://nicetax.nicednb.com> (전송화면 내 사용자가이드 참고)

★ 개인사업자 인증서별 전송가능자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인증서로 ① ~ ⑥ 일괄전송 가능)

[대표자개인인증서, 세무대리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자 인증서] 로그인
신용평가 필수자료 일괄전송 : ① ~ ⑥	신용평가 필수자료 부분전송 : ① ~ ④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 부가세매입매출처합계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0 ~ 2021년) ⑤ 재무제표신고서 (2022년) ⑥ 납세증명원 (국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③ 부가세매입매출처합계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0 ~ 2021년) ⑤ 재무제표신고서 (2022년) → 전송불가 ⑥ 납세증명원 (국세) → 전송불가
※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및 전송이 가능한 시기 전까지는 "재무제표신고서 (2022년)"으로 전송되어 평가에 반영됩니다.	※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⑤, ⑥ 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대표자 개인 인증서]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서]를 통해 자료를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2022년 재무제표 제출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료전송 또는 서류제출 중 택 1)

개인사업자 자료전송(인증서) : 2020년 ~ 2022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전송 (2022년은 재무제표신고서로 전송됨)

→ 자료전송(인증서)에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전송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전송이 가능한 시기 전까지는 "재무제표신고서"로 전송됩니다. (별도 선택 없이 자동 전송)

→ "대표자 개인 인증서"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2022년 재무제표 신고서 전송 가능

개인사업자 서류제출 : 2020년 ~ 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90일 이내 발급분 + 2022년 결산재무제표 1부

→ 스캔하여 파일업로드 또는 팩스제출

Q. 개인사업자의 경우 언제부터 2022년 재무제표 반영 평가가 필수사항 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이후인 2023년 6월부터는 개인사업자 "2022년 재무제표" 반영 평가가 필수사항 입니다.

성실신고대상기업 또는 신고유예 등 기타 사유로 2023년 6월 1일 이후 서류접수 시점에 2022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지원센터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 기업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확인서 1부 제출!

Q. 평가가 완료되면 어떤 방법으로 안내가 진행되나요?

완료예정일에 순차적으로 완료되며 제공 시점에 신청시 등록된 담당자 정보로 카카오톡, LMS, 이메일 안내가 발송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메뉴 "[평가관리 > 평가결과조회](#)"에서 완료된 보고서 또는 등급확인서를 조회/출력 /전송 하시기 바랍니다.

Q. 완료된 신용평가를 조회/출력 또는 제출처로 전송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민간협력업체등록용 CLIP보고서 : 신청시 선택한 제출처에는 평가 완료 후 자동으로 데이터전송이 처리됩니다. 다른 제출처로 추가전송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상단 [평가관리/평가결과추가전송](#) 메뉴에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공공입찰용등급확인서 : "[사용여부선택 > 사용함](#)"을 통해 조달청으로 전송된 평가등급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평가완료 후 2영업일째 18:00경 조달청으로 자동 전송되며 전송 이후부터 등급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송관련 상세내용 및 주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대한전문건설협회 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반드시 [주력분야]로 증명발급이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2.1.1. 시행)에 따라 기존 28종의 전문건설업이 14종으로 통합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대업종]과 [주력분야] 2가지의 양식으로 증명발급이 가능하며,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 시공 순위가 산출됩니다. 당사는 기존 업종과 유사한 [주력분야] 양식으로 건설실적정보를 접수하고 있으니 불편하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증명발급 시스템 (<https://minwon.kosca.or.kr/>) > 증명서신청 > 증명발급신청_주력분야

Q. 건설업종 "기성실적신고서"는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2년 기성실적신고자료는 확인원 발급이 불가하오니 **2023년 2월 중 협회에 신고한 2022년 "기성실적신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이후 2022년 실적확인원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건설업종 평가 진행시 최근 실적 확인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속 협회별로 준비)

Q. 건설업종 "시공능력순위확인원", "건설공사실적확인원"의 정확한 서류명을 알려주세요?

협회별 서류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순위확인원 +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협회	시공능력순위확인원	시공능력평가확인서
1.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해당없음
2.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주력분야)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주력분야)
3. 대한설비건설협회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주력분야)	시공능력평가 내역확인서 (주력분야)
4.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시공능력 확인서	해당없음
5.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I)	해당없음
6. 한국소방시설협회	시공능력 공시업체 순위확인서	시공능력 확인서
7.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시공능력 평가 확인서
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협회	실적확인원 (총괄표 + 실적내역표/신고서 모두 제출)	
1.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실적 총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2.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 (주력분야)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주력분야)
3.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공사 실적총괄표 (주력분야)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주력분야)
4.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실적확인원(I)	전기공사실적 내역표
5.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 실적확인서(I)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6.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 기성실적 총괄표	기성실적 내역서
7.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공사실적 총괄표	건설공사 실적 내역표
8.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실적집계표	엔지니어링사업 수주실적